

# 서울특별시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124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19년 12월 17일

제안자 : 기획경제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서울시 지방분권협의회 의 존속기한을 삭제할 법적근거가 부족하므로 대통령 직속 '자치분권위원회'에 준해, 존속기한을 5년으로 하여 존치함.

## 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서울시 지방분권협의회 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함(안 제11조).

# 서울특별시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1조(협약회의 존속기한) 협약회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5  
년으로 한다.

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 
3일부터 시행한다.

<수정안 조문대비표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 align="center"><u>서울특별시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</u></p> <p><u>제11조(협의회)의 존속기한) 협 의회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, 협의회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후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</u></p>	<p align="center"><u>서울특별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</u></p> <p align="center">&lt;삭제&gt;</p> <p align="right">&lt;신 설&gt;</p>	<p align="center">서울특별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</p> <p><u>제11조(협의회)의 존속기한) 협 의회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.</u></p> <p align="center">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. 다만, 제11조의 개정규정은 <u>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1조(협약회의 존속기한) 협약회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5  
년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서울특별시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</u></p> <p><u>제11조(협약회의 존속기한) 협약회의 존속기 한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, 협약회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후 존속기한 을 연장할 수 있다.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서울특별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</u></p> <p><u>제11조(협약회의 존속기한) 협약회의 존속기 한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.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          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u>다만, 제 11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3일부터 시 행한다.</u></p>